



##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-16호

「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8월 25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### 「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,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, 제2조)

나. 처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다.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8월 30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| 개 정 (안) | 수 정 (안) | 수 정 사 유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[juntae0819@korea.kr](mailto:juntae0819@korea.kr)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의견 | 비고 |
|----------|----|----|
|          |    |    |